

# 2023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제주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4차 모집 공고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참여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Jeju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

## I 공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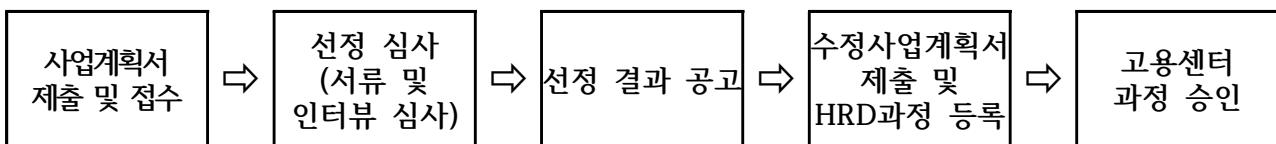
- 공 고 명 : 2023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제주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4차 모집공고
- 접수기간 : 2023년 8월 11일(금) ~ 8월 25일(금) 18:00까지 (방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파일은 이메일 제출 (접수처 : jwoh@jejuhrd.or.kr)
- 접수 마감시간(2023년 8월 25일(금) 18:00)까지 이메일 제출기관만 접수 인정
    - \* 이메일 제출 이후 내용 수정 불가
  - 사업계획서(A권), 훈련계획서(B권) 인쇄본(각 10부)은 대면심사 시 지참
    - \* 미제출시 심사 제외
  - 제출서식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구 분	제 출 서 류	수 량
공 통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1 훈련과정 일람표_엑셀파일	1부
	첨부.2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계획서_A권	1부
	첨부.3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계획서_B권	1부
	첨부.4 신청 훈련과정에 대한 특장점	훈련과정별 1부
	첨부. 5~6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	훈련과정별 1부
	첨부.7 훈련기관 훈련과정 심평원 자료요청 동의서	1부
훈련비 지원단가 <u>130% 초과 신청의 경우만 작성</u>	첨부.8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예산조정내역표_엑셀파일	130% 초과 훈련과정별 1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일 경우	첨부.9 임금체불 등 조회 동의서	1부
	- 최근 1년 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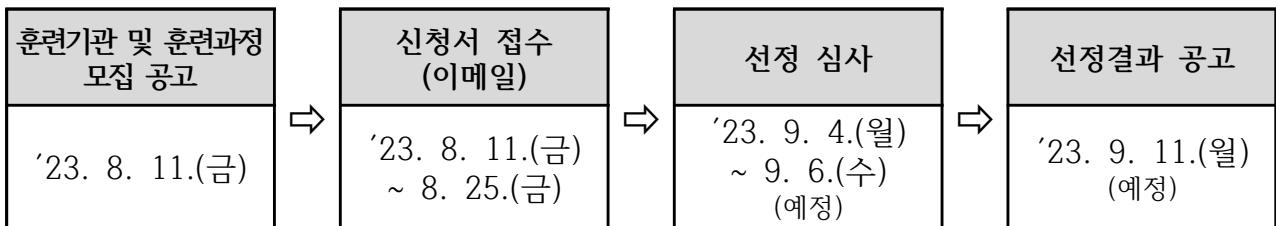
- 훈련과정 중 공모 대상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
- 훈련과정명은 앞에 반드시 (산대특)을 넣어서 작성  
예) (산대특)○○○양성과정, (산대특)○○○향상과정
  - \* 실업자 훈련의 경우 '양성과정', 근로자 훈련의 경우 '향상과정'으로 작성 요망
- 사업계획서와 훈련계획서는 배포된 한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획서 또는 증빙자료에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 (예: 1 또는 2)까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표(\*\*\*)처리 또는 블록처리하여 제출
- 심사 결과 조건부 적합 판정이 되었을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II 심사 개요

### □ 선정 절차



### □ 선정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별 심사 날짜 및 시간은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훈련기관이 실제 적정한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III 사업 개요

### □ 사업 명 : 2023년도 제주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 사업 목적

-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에서 지역·산업현장의 세부 훈련수요 등을 조사하고,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발굴·심사 추진
-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공급하여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 추진

### □ 훈련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 □ 주요내용

### ○ ‘훈련기관’의 참여 장벽 완화 및 훈련비 우대 인정

- 본 사업상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면 진입 혜용
  - \*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대학, ③평생교육시설, ④평생직업교육학원, ⑤그 밖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본 사업을 통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NCS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를 기본 인정(심사 및 정산 불요)
  - \* 단,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해당 지역에 옮겨 개설하는 등 특성상 기본 지원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훈련비 우대 미적용
- 특히, RSC가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으로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00%까지 인정(심사 및 정산 필요)

### ○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훈련비>

- 국민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통하여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300만원)에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유사하게 훈련비 총액과 상관없이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 \*\* ▲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 계좌 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계좌 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 \*\*\* 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따라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  
(단,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가 남아있어야 함)
- 다만,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인 사람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며 수강신청 및 참여 가능

### ※ '재직자에 대한 별도의 훈련비 전액 지원 혜택'의 목적 및 적용 사례

- (목적) 재직자가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강하기에 용이한 단기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 유도
- (적용사례) 산대특 훈련과정 수강신청 당시 재직자로서 별도의 훈련비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산대특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운영되는 다른 훈련과정(일반계좌제훈련 등)은 "타 훈련과정"으로 지칭
    - ▲ 산대특 훈련과정 ① 참여(훈련비 80만원, 전액 지원) → 산대특 훈련과정 ② 참여(훈련비 80만원, 전액 지원) → 훈련과정 ③ 참여(훈련비 80만원, 전액 지원)
      - \* 지원된 훈련비는 240만원이나, 훈련참여자의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차감
    - ▲ 산대특 훈련과정 ① 참여(훈련비 100만원, 전액 지원) → 타 훈련과정 ② 참여(훈련비 100만원, 국비 지원율 50%) → 산대특 훈련과정 ③ 참여(훈련비 130만원, 전액 지원)
      - \* 국비 지원된 훈련비는 280만원이나, 훈련참여자의 계좌한도에서는 250만원 차감(타 훈련과정 참여에 따라 50만원 차감,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에 따라 200만원 차감)
- (유의사항) 산대특 훈련과정 수강신청 당시 실업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의 횟수가 1회로 제한 → 기존에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월 11.6만원 등)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 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22년 기준)

구 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月 최대 11.6만원	月 최대 11.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EITC 수급자	미지급	月 최대 11.6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月 최대 36만원	月 최대 36만원

## <특별훈련수당>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 수당 추가 지급(월 20만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훈련과정) 개별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생계비 대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음

※ '22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 ④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IV 훈련기관 신청 관련

### □ 신청자격

-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등 참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 또는 지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 준법성(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등) 및 재정 건전성이 적정한 기관
  - (인증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1~5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미 준법성 등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도 심사 없이 적정 판단
  - (인증 미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친 이력이 없는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받은 기관은 준법성, 훈련성과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불가
-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실제 적정한 시설·장비, 장소 등을 구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가 병행될 수 있음

#### ※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

- 최근 1년간(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

구분	필수 확인 항목(4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정명령) 처분당 1점 감점</li><li>(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당 5점 감점</li><li>(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①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②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③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li><li>(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①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②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li></ul>
	[2] 임금체불 이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li></ul>
	[3]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li></ul>
재정 건전성	[4] 세금체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세 체납: 10점 감점</li><li>지방세 체납: 10점 감점</li></ul> <p>* 서류 미제출, 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불가,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p>

## V 훈련과정 신청 관련

### □ 기본 요건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지원대상산업·직종 또는 육성산업·직종에 해당하여야 함

### □ 훈련과정 NCS 직종 분류

- 훈련과정의 내용상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을 해당 훈련과정의 NCS 직종으로 분류

-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적정한 NCS 직종으로 분류

### □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여부

- 훈련기관은 그 유형(지정직업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따라 실시 가능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등)

- 다만,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

-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현재 실시가능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예상 소요기간 1~2주, 법정처리기간 20일)

#### ※ 훈련기관(시설) 유형별 직종 부합성 검토사항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검토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전공)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	• 교육과정편성표의 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 <a href="http://www.neis.go.kr">www.neis.go.kr</a> )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정관 • 소속 회원사 명단	•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 지정서 또는 법령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기타	• 정관	•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 □ 과정 편성 기본요건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개설되는 훈련과정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해당하므로, 훈련과정 유형에 따라 기본 요건(훈련시간 및 기간, 강의실 등 최소면적)을 충족
- 다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재직자의 고용 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고용유지 훈련)은 재직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에 따르고
  - ②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전직 및 취·창업 훈련)은 실업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에 따름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통합심사)

구분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p>[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u>실업자 계좌제: 10일 이상, 40시간 이상</u></li><li>• 실업자 국기: 3개월 이상 1년 이하, 350시간 이상</li><li>• <u>재직자 계좌제: 2일 이상, 16시간 이상</u></li><li>• 사업주 위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li></ul>
강의실	<p>[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업자 국기: 20인 기준 <math>45m^2</math>(1인 추가 시 <math>1.5m^2</math>)</li><li>• <u>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자 위탁: 10인 기준 <math>30m^2</math>(1인 추가 시 <math>1.5m^2</math>)</u>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li><li>※ 최소 준수 여부 판단하고,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li></ul>
실습장	<p>[실습실(실습장)의 최소 면적기준(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NCS 적용과정 여부와 관계없이, <u>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기준의 50% 면적</u>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면적 기준 적용</li><li>※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에 필요한 시설면적의 100% 적용</li></ul>
기타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li></ul>

## □ NCS 필수 적용 기준 충족 여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은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NCS 기준을 필수 적용하지 않음
- \* 다만, 훈련비 지원 기준에 대한 직종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NCS 기준 40% 이상 충족 권장
  - \* NCS 능력단위별 시설·장비 기준도 필수 적용되지 않음(단, 훈련과정 개발 시 해당 NCS 시간·장비·시설 기준은 참고할 것)

## □ 인정제한분야 여부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향상 등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서도 인정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부적정하다고 판단
  - 인정제한분야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함

### ※ 인정제한분야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

-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있는 정규 교육과정
  -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호가목(사내대학), 나목(기술대학),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 ④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⑤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과정 포함). 단,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등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취업서비스(전직지원) 관련 훈련과정
-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
  -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단, 재직자 계좌제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

## □ 중복훈련 여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공급체계를 보완하여,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장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수시 공급하는 것이므로
  - 기존 공급체계(통합심사)를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 등과 중복되는 훈련과정을 본 사업을 통해 개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심사 시 부적합 판단

## □ 훈련비 심사

-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으로서 정부승인 훈련비(NCS 지원단가 130%)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 실시
- 훈련비 심사는 ①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요건(하단 표)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② 훈련기관의 훈련비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 검토
  - \* 훈련비 심사 시 예산 비목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 상 기준에 따름

### ※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①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②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할 것

####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번	요건	세부 내용
①	훈련 교·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할 것(①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③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li></ul>
②	훈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나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일 것</li><li>·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li></ul>
③	훈련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li><li>·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일 것</li><li>·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li></ul>
④	실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li><li>·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li></ul>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각 요건별 충족 여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조  
⇒ ①~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 NCS 지원단가의 130%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회계정산 대상에 포함되고, 회계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

\* 리스트에 없는 NCS 직종의 훈련과정 개설이 필요할 시 훈련기관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첨부

### □ 지원대상산업·직종

지원대상산업(KSIC 소분류 기준)		지원대상직종(NCS 소분류 기준)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고용 유지	020401 생산관리 020402 품질관리 150302 기계생산관리 150401 기계품질관리
		전직 및 취·창업	020402 품질관리 150401 기계품질관리 210101 식품가공
숙박업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고용 유지	120302 숙박서비스 130101 음식조리 130102 식음료서비스 150502 냉동공조설비
음식점 및 주점업	561 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고용 유지	120302 숙박서비스 130101 음식조리 130102 식음료서비스
		전직 및 취·창업	130102 식음료서비스 (식공간연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고용 유지	120301 여행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전직 및 취·창업	070101 사회복지정책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고용 유지	100101 일반·해외영업(해외영업) 120304 관광레저서비스 130101 음식조리 130102 식음료서비스 140501 조경 150502 냉동공조설비

### □ 육성산업·직종

육성산업(KSIC 소분류 기준)		육성직종(NCS 소분류 기준)
스마트관광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912 스포츠 서비스업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120301 여행서비스 120302 숙박서비스 120303 컨벤션 120304 관광레저서비스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5 정보기술영업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200303 방송서비스 240103 농촌개발 (농촌체험상품 및 시설운영)
청정바이오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51101 스마트공장 설계 151102 스마트공장 설치 151103 스마트공장 운영관리 170307 화장품 200109 스마트물류 210101 식품가공
그린에너지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1 전기업 612 전기 통신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90104 지능형전력망설비 190112 전기저장장치 190113 미래형전기시스템 230505 재생에너지 230506 에너지관리

1.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문의 권고
2.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계획서 작성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제주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통합심사 훈련과정과 중복성이 없어야 하며, 중복과정 신청이 확인될 경우 심사 시 부적합 판단
4.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미비일 경우 심사 제외
5.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도 사업에 참여 가능.  
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담자는 참여 불가
6.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선정 후 관할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함
7. 사업문의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대·특 담당자 (064-757-2165)